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	수정 후
122p 적중예상문제 번호 : 30	해설	수정 전	<p>해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지리적표시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(시행규칙 제58조 제1항)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록일 및 등록번호 •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,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 및 전화번호 •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•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•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•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	
		수정 후	<p>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공고결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(시행규칙 제14조 제4항)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신청인의 성명·주소 및 전화번호 ·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·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·품질,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·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·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장소 	
132p 적중예상문제 번호 : 51	해설	수정 전	<p>해설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(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항)</p> <p>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·농산가공품의 생산자·소유자(이하 이 조에서 "생산자 등"이라 한다)에게 법에 따른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 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조치 대상은 검정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지 면적 또는 물량에 해당하는 농수산물·농산가공품에 한정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·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: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 동안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• 해당 유해물질의 분해·소실기간이 길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, 사료·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: 국내 식용으로의 판매금지 •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: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폐기 	
		수정 후	<p>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(법 제63조 제1항)</p> <p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·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·사용하는 농지·어장·용수·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, 용도 전환, 출하 연기 등의 처리 ·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·사용한 농지·어장·용수·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·사용의 금지 ·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·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	
143p 적중예상문제 번호 : 77	문제-문항	② 지리적표시의 등록		② 임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